

영국사례 1

제기된 불만 내용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치가 취해졌다면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 불만제기인: Peaches Geldof
- 인용된 조항: 제1조(정확성)
- 언론사: Daily Star

불만내용

Peaches Geldof는 변호인 Swan Turton를 통해 2008년 9월 'Peaches : 5천 파운드에 나와 하룻밤을'이라는 제목으로 「Daily Star」에 실린 기사가 실천강령 제1조(정확성)에 어긋난다며 언론불만위원회(PCC)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신문사가 이미 충분한 개선 조치를 취한 이후여서, PCC는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신문은 1면 기사에서 불만제기인이 "그녀와의 교제를 절실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고, 그

녀와 그녀의 매춘부 동료들은 상류 인사들의 파티에서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다"고 보도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기사 내용에 따르면 Peaches Geldof가 명사들의 파티에서 돈을 대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인데, 이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문 1면에 사용된 '5천 파운드에 여자와의 하룻밤'이나 '나와 하룻밤'이라는 문구들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성산업과 연결되고 있다며 몇 가지 예를 보였다.

그는 신문사가 Peaches Geldof 관련 이야기에 1면 전체 페이지를 할애했다는 사실은 매우 선정적인 내용(예를 들어 그녀가 단지 파티에 참석했다기 보다는 그녀의 고객들이 성산업에 연결되어 있다는 등)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

다. 1면에서 5면까지 이어진 기사는 "불만제기인이 상류 인사들의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6천 파운드를 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 또한 부정확한 것이며 그녀는 DJ로서의 공연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고 말했다.

'Peaches & Dream', 'Geldof와 그녀의 동료들을 하룻밤 5천 파운드에 고용'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기사는 속옷 차림인 Geldof의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성적 함의를 내포하는 것으로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문사는 1면의 기사가 5면 기사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두 번째 기사는 불만제기인이 DJ를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했으며, 이는 "DJ 일을 하고 있다"는 Geldof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방식

이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그녀의 대변인이 ‘그녀는 지원할 가치가 있는 브랜드의 행사에만 참석을 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인용했으며, 서비스가 성적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2면이나 5면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크기의 사진과 함께 사과 기사를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Daily Star」는 “9월 29일자 1면과 5면에 Peaches Geldof에 대한 기사를 실은 바 있으며, 1면에 ‘PEACHES : 5천 파운드에 나와 하룻밤을’, ‘그녀의 매춘부 동료들은 상류 인사들의 파티에서 막대한 돈을 긁어모았다’는 기사에 나온 것과 달리 그녀는 런던 패션위크 같은 행사나 파티에 참가하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녀가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는 제목에 대해 Peaches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불만제기인은 사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했으나, 그 기사가 1면에 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문사와 PCC가 다른 사례에서는 1면에 실린 기사에 대한 사과는 1면에 게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녀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1면만을 봤을 것이기 때문에 1면에 사과가 필요하며, 신문사는 파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사과가 좀 더 두드러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 정

충분한 개선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

평 결

위원회는 불만제기인이 실천강령 제1조(정확성)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불만이 타당하다고 동의한다. 불만제기인이 파티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 돈을 받았다고한 신문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발행 전에 신문사가 이미 알았던 것이다. 또한 사과가 1면에 실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불만제기인의 염려에 심정적으로 동감한다. 신문사는 이를 불성실하게 다뤘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문사가 비록 본문에서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1면에 의도적으로 암시하는 제목을 실음으로서 독자를 오도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규정의 기준에 못미치는 조잡한 저널리즘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신문사가 불만제기인에게 사과해야 한다. 양측은 사과문에서 중요 사실이 부정확했다는 것을 언급한 부분과, 1면의 기사가 함축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위원회와 관련해 남은 문제는 ‘얼마나 두드러지게 사과 내용을 보여야하느냐, 1면에 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과가 1면에 게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1면 내용은 특정한 해석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불만제기인이 얘기한 ‘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 기사는 그 서비스가 어떤 성적인 방법이라고 암시한 적이 없으며, 파티에서 공연은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면과 달리 1면 기사에서는 특별히 부정확한 주장을 한 적이 없으므로, 사과문을 2면에 사진과 함께 게재하기로 한 결정은, 위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한 것이다. 위원회는 신문이 이에 대해 사과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기를 희망한다.

2009년 4월 2일 평결번호 78

영국사례 2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이를 취재하는 것은 실천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불만제기인 : Mr. Phil Adey
인용된 조항 : 제6조(어린이)
언론사 : Daily Post (웨일즈)

불만내용

St. Asaph에 거주하는 Phil Adey는 「Daily Post」가 실천강령 제6조(어린이)를 위반,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15세 딸을 인터뷰했다며 언론불만위원회(PCC)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안에 대해 PCC는 잠작할 만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불만제기인의 주장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불만제기인은 기자가 자신의 딸 학교 친구 중 한 명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의 15세 딸을 집에서 인터뷰했다고 진술했다. 그때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신문사는 기자가 그 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몇몇 집의 문을 두드렸고, 불만제기인의 딸은 그 사고가 어디서 일어났고, 다친 소년이 누구인지 확인해주었다. 기자는 그 때 그 소녀가 교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16세 이하라는 것

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그녀의 부모는 부재 중이었고,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자는 즉시 취재를 중단하고 집을 떠났다.

결 정

불만제기 내용을 인용한다.

평 결

실천강령 제6조(어린이)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는 그들이나 다른 어린이들의 복지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인터뷰나 사진 촬영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가 고려해야할 사항은 두 가지다. 기자와 불만제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인터뷰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녀의 복지와 관련된 것인가,하는 점이다.

첫 번째로, 기자가 불만제기인의 딸로부터 사고에 관해 상당한 정보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대화가 (간단한 유사) 인터뷰

로 분류된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조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친구의 사고에 관한 뉴스는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 아버지에 의하면 그녀는 그 사고에 대해 대답해야 했던 것에 당황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마음 아파하는 15세 소녀를 인터뷰 한 것은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 비록 기자가 그녀의 교복을 입은 모습과 그녀가 희생자를 알았다는 점에서 그녀가 16세 이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 취재 시도를 하지 않았을 수 있었더라도, 기자는 취재 도중 이를 안 즉시 인터뷰를 중지했다. 이 조치는 뒤늦은 것으로, 기자는 그 소녀가 인터뷰에 관여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지는 않았으며, 불만제기인의 딸에 대한 어떤 공공의 영향도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조항 위반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2009년 11월 2일 평결번호 78

호주사례 7

언론이 취재대상자에게 기사내용에 관한 적절한 답변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불만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평결번호 1418
(2009년 3월 평결)**

호주언론위원회(APC)는 피지 고등 법원의 판사인 Jocelyne Scutt 이 「The Australian」에 대해 제기한 불만의 주요 부분을 기각한다. 그러나 군사 정권과의 ‘연관성’을 주장한 신문사의 주장에 대한 불만은 인용한다.

2006년 12월 피지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 Scutt 판사는 군사 정권 기간 내에 임명됐다.

불만제기 대상 기사 중 2008년 3월 10일자 기사는 그녀의 판사 임용 수락에 관해 보도하면서, 그녀가 고국을 버리고 사임한 여섯 명의 판사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용된 고등법원 판사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또 ‘피지여성 권리운동’ 단체와 두 명의 저명한 변호사가 그녀를 비판한 내용과 함께, 호주 외교부 대변인이 ‘피지의 사법부는 호주 국적자를 포함, 고국을 떠난 판사들 다수에 대한 계약 연장을 거부했다고 비난하고, 피지 임시 정부는 피지의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를 되돌려 놓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2008년 3월 15일자 기사는 ‘공공 연대를 위한 태평양 센터’ 대표 Angelina Heffeman의 말을 인용하여 그 단체를 ‘피지의 민주주의를 위한 압력단체’로 묘사하고, Heffeman이 호주의 여러 법률 단체와 정부에 ‘호주 변호사들의 해외 활동을 규제할 방안’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서 Heffeman은 호주 법률 단체들에게 ‘불법적인 피지 사법부 임명’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윤리적으로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Scutt 판사는 그 기사들이 ‘매우 명예훼손적인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고, 출판물에 대한 회수와 사과문 게재를 요구했다. 그녀가 주장한 핵심은 신문이 자신이 ‘군사 정권’으로부터 판사 임명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한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피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 주장했다. 또 피지의 사법 인사는 피

지 사법 서비스 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문은 이러한 주장이 ‘솔직하지 못하며’ 피지 사법 서비스 위원회는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에 의해 장악됐다고 반박했다. 신문은 또 Scutt 판사는 Tasmania 반차별 감독관이었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여성 운동가이기 때문에 다른 판사 임용자에 비해 그녀에게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정당하며, Scutt 판사가 공인이기 때문에 군사 정권 하의 판사 임용 수락과 관련한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고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기사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Scutt 판사는 사법부의 인사에 관한 문제는 현재 심리 중인 문제(보도가 금지된)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썼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APC는 이러한 상황이 (자신의 임용 관련 보도에 대한) 그녀의 불만을 정당화하는 데 어떤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한다. APC는 신문이 처음 기사를 게재하기 전 Scutt 판사의 의견을 구하기 위

한 시도가 적절치 못 해 보인다는 점에서 신문사를 비판적으로 본다. 그러나 Scott 판사는 그녀의 판사 임용 수락을 둘러싼 문제들에 답할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답변을 거절한 것에 주목한다. 그녀는 판사로서

‘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거절했고, 신문사가 계속 보도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C는 불만 제기인이 ‘피지의 군사 지도자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군사 정권에 참

여했다’고 보도한 것은 지나친 감이 있으며, 이는 군사 정권 인사들과의 협력과 연계를 함의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 판단한다. 신문사는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시킬 여편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호주사례 2

언론사가 특정 이슈에 대해 여러 시각을 보여 주었다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평결 번호 1416
(2009년 3월 평결)

호주언론위원회(APC)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다룬 「The Australian」의 2008년 11월 26일자 칼럼에 대한 Rabih Alkadamani의 불만을 기각한다.

불만제기 대상 기사는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그 지역을 방문한 후 Janet Albrechtsen가 그 곳에서 겪은 경험과 시각을 담은 기사다. 그녀는 이 기사에서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한 얘기와 함께 서방의 지원을 받아 증오를 키우는 교육을 받는 팔레스타인의 어린 세대들이 미래의 평화를 요원하게 한다는 내용 등 ‘평화를 막는 장애물들’에 대해 얘기했다.

Alkadamani는 Albrechtsen의 기

사가 증오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아 이들에게 돌리는 인종주의적인 기사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기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편향된 시각으로 비판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 아래서 고통 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야기는 배제함으로써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추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사가 이스라엘 교과서에 담긴 왜곡된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태만했다고 비판했다.

Alkadamani는 「The Australian」에 Albrechtsen의 시각을 비판하는 의견 기사를 보냈으나, 「The Australian」은 Albrechtsen의 칼럼이 나간 이후 다른 독자 의견을 실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의견 기사를 실지 않았다.

Alkadamani는 「The Australian」의

의견란 편집자 Rebecca Weisser 또한 이스라엘의 후원을 받아 그 지역을 여행한 사람이라 지적하고, 이러한 경험이 11월 29일자 기사가 친 이스라엘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APC는 신문의 의견란은 언제나 논란이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문제에 관해 언론사가 시의적절하게 여러 시각을 보여주는 한, 공정성과 균형성을 갖췄다고 봐야할 것이다. APC는 언론사는 특히 후원을 받는 취재 여행을 할 때는 더 공정성을 담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이 사안과 관련 신문사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한다.

뉴질랜드사례

**개인적 사안과 관련된 보도라 하더라도 공적인 목적이려면
사생활의 침해는 어느 정도 수인 되어야 한다**

- 사건 번호 : 2066 DAVE HANSFORD v. NATIONAL BUSINESS REVIEW
- 위원회 회의 : 2009년 3월

배 경

2008년 4월 24일 「National Business Review」의 ‘Media Watch’ 정기 칼럼에서 David Cohen은 AUT Media의 ‘Hot Topic’ 온라인 코너에 실린 사과문과 댓글을 기사화했다.

기사화된 사과문은 AUT Media의 생태 관련 기고자인 Dave Hansford가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자들이 주류 매체에서 편애를 받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쓴 후 잡지사와 결별하게 된 일과 관련된 것이다.

Cohen의 칼럼은 “Hansford가 환경 문제와 관련, 문제적 의견을 냄으로써 편집자와 결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는 이와 관련, “Hansford가 투고한 글을 「Forest and Bird」가

신지 않기로 한 일과 결국 사과와 기사 철회로 끝난 국립 수질 대기 연구소(NIWA)의 연구원에 관한 기사 등을 포함, Hansford와 언론사들 사이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불만 내용

Hansford는 8월 28일 언론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에 관한 Cohen의 발언은 부정확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언론위원회의 정확성, 공정성, 사생활, 비밀보장, 의견과 사실, 편법에 관한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불만제기 대상 기사는 「Forest and Bird」가 자신의 칼럼을 거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며, 그의 칼럼은 다른 이유로 실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과 다른 내용 때문에 국립 수질 대기 연구소(NIWA) 관련 기사에 대해 사과하게 됐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며, 단지 NIWA

는 기사 내용 중 인용과 관련된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고, 기사 철회는 없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Hansford는 또 Cohen이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잡지들은 참고하지도 않았다고 불평했다.

불만제기인은 그 칼럼이 자신을 신뢰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뉴질랜드 기후 과학 연맹(NZCSC)에 대해 비판한 것을 보복하려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과 「Forest and Bird」 사이에 오간 이메일을 Cohen이 획득한 것도 사생활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 박

해당 신문은 Hansford와 관련한 기사를 ‘Media Watch’ 칼럼에서 다룬 것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불만제기인은 Cohen이 뉴질랜드 기후 과학 연맹(NZCSC)을 대신해 보복한 것이라 주장하나, 불만제기인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깎아내리

려고 했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며, Cohen은 NZCSC 쪽 사람들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 칼럼을 쓰기 위한 과정에서 Cohen은 Hansford의 다른 언론 활동들을 조사할 자격이 있고, 불만 제기인과 해당 잡지사 간의 이메일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이 없었으며 그것은 적절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칼럼에서는 이메일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반박

Hansford는 Cohen이 NZCSC와 관련이 없다는 해당 언론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 단체에서 두 명의 회원이 정기적으로 해당 언론사에 투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Cohen이 NZCSC를 대신해 자신에게 보복하려고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메일은 그 주제와 관련이 없음에도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 획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 의

기후 변화는 각 정파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한 논의가 다

뤄진 방식을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그러한 보도와 관련된 배경을 함께 다루는 것 역시 예상할 만한 일이다.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표명하는 Hansford를 포함한 칼럼니스트들이 자신 또한 주관적 의견이 담긴 반응을 접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Cohen은 Hansford와 관련된 자신을 획득하면서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편법적인 방법이 동원됐다는 증거도 없다. 이 사안은 개인에 관한 일이라기보다 공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므로 Hansford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볼 수 없다.

Media Watch 칼럼에서 Cohen이 NZCSC를 대신해 악의를 가지고 글을 썼다는 증거도 없다. 같은 언론사에 글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언론사에 기고한 두 명의 NZCSC 회원을 그가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하다. 다른 동료 기고자들과 만나지 않고 한 언론사와 오랜 기간 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사실과 의견에 관한 위원회의 원칙은 언론이 그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칼럼에서 Cohen의 의견은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합리적인 용어로

표현된 그의 주요한 관심은 웹사이트에 올라온 의견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기후 변화와 관련 언론에서 다루진 '예언적인 시나리오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자신은 '무엇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언론사와 Hansford의 공적인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 언론사와 Hansford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당사자에게 어떤 손해를 유발하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한 불화는 매체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불만제기인이 다른 편집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보도가 공평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Hansford의 글이 잘못됐고, 정정됐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Media Watch 칼럼은 왜 기고문 하나가 실리지 못했는가를 설명하기 보다는 편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Hansford는 그 글이 인터뷰의 주제가 흥미롭지 못하기 때문에 실리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Media Watch 칼럼은 「Forest and Bird」가 Hansford가 쓴 NIWA

기사와 관련 사과해야 했다고 주장 했다. 칼럼은 그 사과가 기사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라고 밝혔지만, 기사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Hansford의 글이 특정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저널리즘이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위원회는 NIWA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본질을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Hansford가 사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Cohen은 그 사과에 대한 배경을 밝힐 자격이 있으며, 그가 전문적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밝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

불만제기인이 부정확성, 사생활, 비밀의 보장, 의견과 사실의 구분, 편법적 정보 취득 등에 대한 위반으로 제기한 문제를 기각한다.

